

군내 성범죄 사고에 대한 예방적 고찰*

A Study on the sex crimes in the Military Guardhouse

이 만 종(Lee, Man Jong)**

ABSTRACT

Since the 2009, sex crimes in the military guardhouse that had generally recorded lower than speedy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korea's traditional extended family system was replaced with nuclear family which brought in several changes to many women's way of thinking and values.

The most insidious enemy is one that strikes from within. This sort of enemy could be present within your unit even now An enemy that chips away with readiness by breaking down mutual trust.

An enemy that destroys teamwork by turning comrades into foes, and weakens an entire military unit, The enemy is sexual harrassment, just as the military constantly guards against external enemies, it's vital that we confront this enemy that strikes from within, Fight sexual Harrassment,

Therefore, a precise analysis on causes and factors of sex crimes in the military guardhouse, which is on the steep rise along with military changes of korea, is one of the most necessary steps to map out prevention measures to stop female crime from increasing.

Key words : 성희롱(Sexual harrassment), 성폭행(Sexual assault), 방심할 수 없는(insidious), 붕괴시
키다(breaking down)

I. 서 론

최근 군내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급선무지만 정작 군의 실태조사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군대내 성범죄는 상당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후임 병 이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에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¹⁾

* 본 논문은 2009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1)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579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기소 279명(47%), 집행유예 156명(27%), 벌금 38명(7%) 등이며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2명(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자료 참조).

군내 성범죄는 병영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은 쉬쉬하고 넘어가기 쉽고, 계급을 앞세운 군의 성추행은 수치심과 함께 당사자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군의 사기저하 및 복무환경훼손은 물론 전력손실과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군 조직으로의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여 전체 군 간부 정원의 약 2.7%(2008. 11기준)에 이르고 있으며²⁾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일환으로 2020년까지 전체 군 간부의 5.6%수준까지 여군비율을 끌어올릴 방침이기 때문에 여군들의 증가에 따른 군내 성범죄사고의 비율도 증가할 것이다.

<표1> 여군현황(2008. 8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총
장교	2067	252	299	2618
부사관	1563	224	505	2292
총계	3630	476	804	4910

*자료: 2008국정감사자료

아울러 군은 동성 간의 집단생활의 특성으로 인해 동성 간의 성 군기위반행위(성범죄, 성희롱)가 종종 발생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주장이 거론되고 있는 분 위기여서 동성 간의 성 군기위반사고도 수면위에 떠오르는 현실이다.³⁾

이에 국방부에서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방부훈령 제 686호(01. 6. 11) “성 군기위반사고방지에 관한 지침”을 발령하고 각 군별로 특별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군대내 성범죄를 근절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군대내 성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법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2008년 기준 선진국 군대들의 여성비율은 미국 16.0%, 영국 8.1%, 프랑스 13.0%, 일본 4.2%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실제목표율도 이보다 높다.

3) 2006년 6월 28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대장 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수립을 권고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이 군 형법 제 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심판을 현재에 제청했다. 이들 군법무관이 표명한 동성애 인식을 인권위나 성소수자지지단체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즉 동성애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태적인 것이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II. 군내 성범죄에 관한 개념과 유형

1. 군내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군대내 “성 군기 위반사고”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문란·부대단결저해·군 위상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 군기위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성범죄와 성희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군대내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 형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품속을 해하는 행위(강간, 강제추행, 간통, 혼인빙자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등)를 말하며 “군대내 성희롱”이라 함은 국방부훈령(제 686호:01)에 규정된 자인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언동 기타요구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차이를 이유로 복무, 근무평가, 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외에 “기타 성 군기위반사고”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 사 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나 기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한 성관련 사고라고 개념정의하고 있다.⁴⁾

또한 군내 성범죄의 특징으로는 주로 지위차이에 의한 성폭력과 여군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하는데서 오는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성이나 부하를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성적대상자 정도로 여기고 계간 등 성추행이나 폭언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군내 성범죄 유형

1) 성범죄 유형

군대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군의단결과 사기 등 군의 전투준비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군내 성범죄는 동성 간의 행위와 이성간의 행위로 구분되어 간부에 의한 병사들에 대한 추행, 선임 병에 의한 후임 병 추행, 동성 간의 성교행위인 계간, 상급자

4) 국방부훈령 제686호(01. 6. 11) 성 군기위반사고 방지에 관한지침 제 3조,

에 의한 여군·여군무원 추행과 하급자에 의한 여군·여군무원 추행과 성희롱 등 군대 내의 각종 관계 속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관- 부하간의 성폭력

목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업무 및 상하관계 등으로 부하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B O Q, 내무반, 사무실, 회식장소 등에서 신체접촉, 계간, 성추행,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인 부하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부하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훈련 및 내무생활 등에 있어서 부하에 대한 상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 등이 상관- 부하간의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하들은 상관이라는 점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성폭력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이후에는 가해자가 상관이라는 점에서 대응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2) 선임 병- 후임 병(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화장실이나 내무반 등에서 선임 병이 후임 병을 계간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군내에서 동성 간에 자행되는 성추행 사건이 이성에 대한 성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군대라는 자체가 위계적 사회이며, 또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사병들의 잘못된 통념이⁵⁾ 선임병과 후임병간 성범죄를 유발시키고 있다. 더구나 내무생활 특성상 가해자 신고 시 피해사병이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나 보복이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군대 성폭력 사건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성희롱 유형

성적인 언동과 성적인 요구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 할 수 있는데 군대내 성희롱의 유형은 대개 남성 고위간부가 부하 여군간부를, 지휘관이 슬에 취한 것을 빙자해 부하의 부인을, 고참병이 하급자를, 지휘관이 당번병을 성희롱 하는 것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사병이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여 군 기강 측면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5) 군대내 잘못된 통념으로는 이외에 "신병이 들어오면 남녀의 역할을 주고 섹스 흉내를 내게 하라고 과거 성 경험담을 들어놔야 하는 것을 통과의례"로 보며, 선임 병이 후임 병에게 불에 입 맞추는 등 날 뜨거운 것을 하는 선임 병이 있지만 워낙 고참이라 주변에서 말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사회통념상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다.

(1) 부하 여군에 대한 성희롱

00사단 00대대장이 여군 소위에게 “이상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3일간 집요하게 묻고, 또 다른 여군 소위에게는 얼굴이 퉁퉁하고 배가 튀어나오고 돼지처럼 살이 뒤룩 뒤룩 쪘다는 등 언행을 일삼았다.

(2) 부하 가족에 대한 성희롱

00연대 00대위는 소속 대 하급자의 집에서 회식 시 하급자가 술에 취해 잠이든 사이에 하급자의 처 00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손금을 봐준다며 처 00의 손을 강제로 만지고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등·허리 부위를 만지고, “부부관계는 자주하나, 부부관계를 자주해라, 남자는 그것을 원 한다”고 말하며 처 00를 성희롱하였다.

(3)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

00사단 00준위가 같은 처부의 상관인 여군 중위에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외박 다녀와서 얼굴에 꽃이 떴네, 낭군님하고 하룻밤 같이 보내고 와서 그런가? 이젠 처녀가 아니지? 알건 다 알잖아?”라고 말하는 등 수회 읊란한 농담을 하고, 또 전투복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폰이 보기 좋다며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거나, 여군 중위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외 사례로 병사가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자 여군 장교가 병사의 하반신을 땅에 파묻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 여군 무원에 대한 성희롱

00부대 소령이 BOQ에서 아침 기상 후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다가 B O Q에 임시 거주하는 9급 여군무원이 식탁의자에 앉아 화장 중인 것을 발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만지고 가슴을 건드려 성희롱하였다.⁶⁾

III. 군내 성범죄 발생원인 및 실태

1. 군내 성범죄 발생원인

1) 환경적 원인

군대내의 폐쇄적 환경은 병사들의 경우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하급자에게 표출하게 되

6) 김미진, “군내 성 군기 위반사고에 대한 고찰”, 국방부 군사 법 논집, 2004, 306.

며, 이와 같은 표출은 폭력으로 나타날 수 도 있으며 성범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동성애는 자신의 지배나 지시를 내리는 후임 병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성추행의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절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후임 병에게 새로운 가해자로서 반복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병영 내 악습은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⁷⁾

또한 군 특유의 과도한 회식문화와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상태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향이 많고, 일과 후 일정지역내로 거주지가 제한되어 이것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성희롱을 야기하는 경향도 있다.

2) 은폐의 원인

성범죄 및 성희롱은 개인의 신변이 보호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상관에게 보고된다하여도 부대관리에 부담을 우려 공론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여도 미온적 처리를 우려하여 신고 및 보고 등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군내 성범죄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3) 인식 및 예방교육 미흡

병영 내 성범죄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성추행에 대한 군내 '불감증'이다. 즉 군에서의 가벼운 성추행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종의 통과의례로 받아들여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문화로 인해 병영 내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침묵 속에 묻히고 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 대상에 있어서도 부대 내 지휘관·참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군내 성범죄 발생이 장교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만연하고 있으나 성 군기 예방사고에 대한 개념 및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간부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방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할 수 있다.

7) 위 사항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입대하기 전부터 동성애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입대 후 부대 안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동성애를 하는 경우도 군내 성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이나 이에 대해서는 군내 동성애를 성향의 문제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8년 11월에는 육군 22사단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 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도 하였다.

2. 군내 성범죄 실태

1) 최근 5년간 성범죄 현황

군내 성범죄를 성희롱에서부터 성폭력에 이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공군 내 최근 5년간 성범죄현황을 연도별, 유형별, 신분별 현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유형 연도	강간	강간 미수	강제 추행	강제추 행미수	추행 (영내 병사간)	성폭 행	간통	홍법 간통	채팅 관련	계
2004	6	1	3	1	2		1		4	18
2005	1		2	2	3	1				9
2006	5	3		2		3			3	16
2007	5		4			1	4	4		18
2008			8			2	1	1	7	19
총계	17	4	17	5	5	7	6	5	14	80

*자료: 공군본부 현병 단 범죄통계(2009. 1)

<표1> 연도별/ 유형별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04~08년)공군 내 성범죄자는 총 80명으로 연평균 16명이다. 이는 육군과 해군의 통계를 제외한 숫자이지만 병력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은 수치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⁸⁾

<표2> 연도별/ 신분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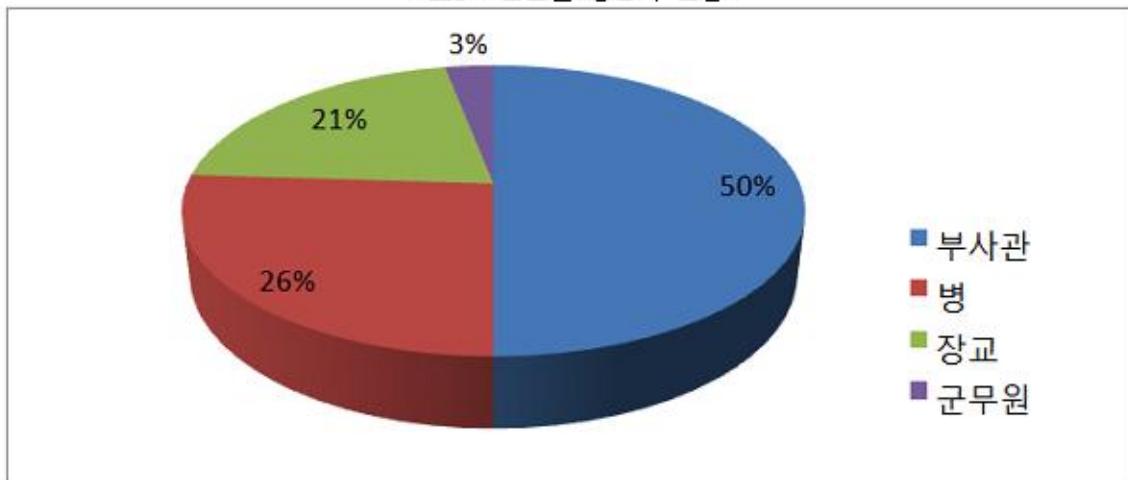
구분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계
2004	5	6	5	2	18
2005	4	4	1		9
2006	3	9	4		16
2007	3	10	5		18
2008	2	10	6	1	19
계	17	39	21	3	80

*자료: 공군 현병 단(2009. 1)

8) 육군, 해군의 최근 현황은 공개가 되지 않아 공개가 확인된 공군현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나,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내 성 범죄자는 2000년(152건), 2001년(151건), 2002년(141건), 2003년(211건), 2004년(238건)으로 점차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면 신분별로는 부사관 50%, 병 26%, 장교 21%, 군무원 3%순으로 성 범죄 사고가 계급 고하를 불문하고 발생하였으며, 음주 후 순간적인 성충동에 의해 많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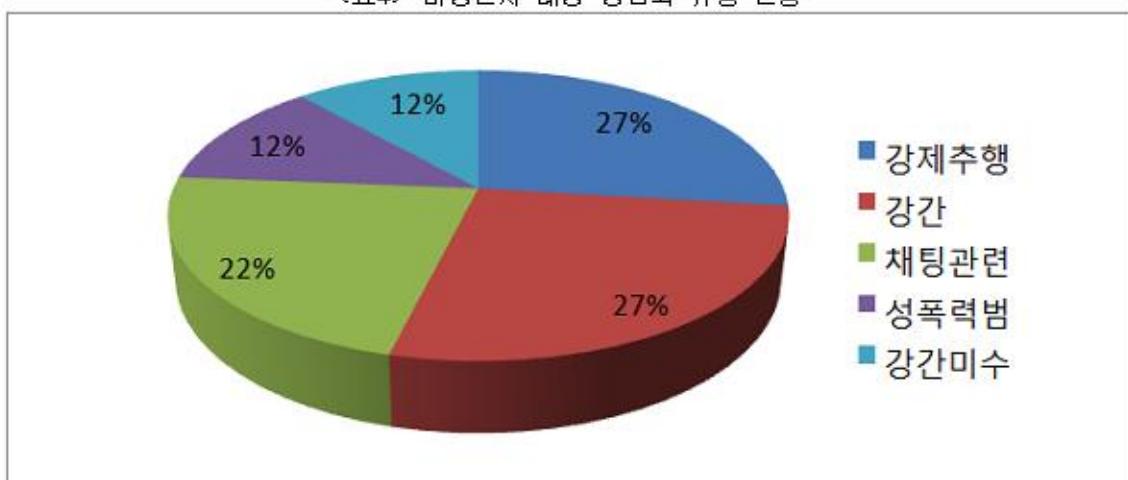
<표3> 신분별 성범죄 현황



*자료: 공군 현병 단 범죄통계(2009. 1)

성범죄 사고 발생유형은 강제추행(21%), 강간(21%), 채팅관련(17.5%)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혼자는 간통/ 강제추행, 미혼자는 강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하사, 중사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그 외 영내 병사 간 동성 간 추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이 발생하였다.

<표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형 현황



*자료: 공군 현병 단 범죄통계(2009. 1)

병사들에 의한 성범죄 사고는 상병 및 병장 계층에서 발생하였고, 영내에서는 병사 간 추행, 영외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형태로 발생하였다. 특히, 공군 내 여군 인력 증가 추세로 성 군기 위반사고 발생요소가 증가하였는데, 08년 여 군 인력 현황 333명(장교 142명, 부사관 192명)으로 공군간부 정원대비 0.5%를 차지(08. 6. 30일 기준)하고, 2020 까지 여군인력 목표가 1060명으로 간부정원대비 41%를 예상하고 있어 여군인력에 대한 군내 성희롱 예방대책이 보다 강력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⁹⁾

3. 군내 성범죄에 대한 문제점

1) 군성범죄 처벌 미흡

국방부는 2001년 6월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 지침'을 전군에 하달한 바 있으며, 성 군기위반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¹⁰⁾ 징계 별 그리고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부 적합 처리'라는 인사상의 제재로 군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¹¹⁾

그러나 효력 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다 평가이다. 이는 병영 내 성범죄현황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차 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물론 지휘권 유지와 폐쇄적인 군부대 특성을 감안한다하여도 계속 은폐하고 이로 인해 처벌 역시 미흡하게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병영 내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공개, 처벌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¹²⁾ 또한 성추행에 대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도 강화하는 것도 검토

9)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간호장교들을 제외한 여군 13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결과 (530명이 응답),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89% 한두 번 있었다. 9.3%, 가끔 있었다. 1.7%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남군으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빈 번함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 69.8%, 한두 번 정도는 있 었다 예 22.5%, 한두 번을 넘는 정도의 가끔은 6.9%, 자주 경험한 비율은 0.8%로 나타났다.

10) 형법상의 규정으로는 형법 제 241조(간통죄), 제 242조(음행매개죄), 제 297조(강간죄), 제 299조(준강간 및 강제추행죄),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이 있으며 특별법상의 규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가 있으며, 군형법상의 규정으로는 군형법 제 92조(추행 죄)를 규정하고 있다.

11) 군사 법 제 10장(제 56조~ 제 61조)에 의하여 군인으로서 '군율을 위반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문에 위배되는 성적문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하위규정인 각 군 징계규정에도 풍기유지의무위반이라는 징계사유를 두어 '사생활 방종'과 '군 풍기 위반'이라는 징계항목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육군규정 189). 또한 군인사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하여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 및 제적사유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 4호에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 규칙 제 56조에 의하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제 2호는 ①사생활이 방종하여 군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자 ②변태적 성벽자 를 포함하고 있다.

12) 2003년 주한미군 군사법정은 경기의정부 미 2사단 부대 내에서 카투사 1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미군병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뿐 아니라 음란, 변태행위, 허위진술, 사전모의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된 중형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미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여야 한다.

<표5> 군내 성범죄 처리현황(2003~2005)

불기소	집행유예	벌금	실형	총
279명(47%)	156명(27%)	38명(7%)	22명(4%)	579명

*한나라당 국정감사자료(2006)

2) 군내 양성평등 및 인권의식 미흡

계속되는 군내 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지만 일선부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조된 성범죄 근절대책 역시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군내 성폭력은 힘으로 제지할 수 없는 권력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영관급 군의관의 부하 간호장교 성희롱 사건사례와 같이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간부들이 부하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지휘관을 통한 사고예방 역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군내 조직문화 및 군 기강 해이

군내부의 자체적인 개혁과 투명성 확보 노력은 군내 문화가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상명하복'과 '폐쇄성'이라는 군대 고유의 조직문화의 특수성은 성범죄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의 가벼운 성추행은 통과의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군내 고질적인 악습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병영 내 성범죄 중 상당수가 침묵 속에 묻히고, 이를 견디지 못하면 자살 및 총기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군 조직이 일반 사회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도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엄포성 지시보다 군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실효성이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V. 군내 성범죄 예방대책

1. 교육적인 측면

매번 군내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지휘관의 정신교육 등을 통해 성추행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방부호령 686호) 역시 제 10조에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을 명시¹³⁾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대장이 부하병사를 성추행하고 영 관급 군의관의 부하 간호장교 성희롱 사건 등에서 부하장병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인 지휘관까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휘관을 통한 사고예방이 더 이상의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교육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도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내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양성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남녀의 성차별적 문화가 군대 내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녀 군 인간 대화 또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양성평등 의식교육 강화과정은 군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제도적 측면

군내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행보다 정신적 후유 증 이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체물로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양태가 더욱 폭력적이고 충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입장에서는 군대 내의 위계적인 분위기로 인해 분노나 두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대부분 침묵을 지키게 되며, 참을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기 까지 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군내 성범죄 문제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현제도 군수사기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치가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비밀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군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들의 고충을 제기하도록 용기를 주는 그러한 고충처리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3)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방부훈령 686호)에 의하면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 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성 군기 위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사고를 유발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군대 인권개선 측면

신병은 선임 병의 '성적 노리개'가 되는 일이 많다는 군 전 역 자들의 군에 대한 인식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군내 성범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것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군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수치심을 가슴 속에 담아둔 채 견뎌 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똑같은 동료로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여성 비 하적 문화, 성차별적인 관행개선 등 새로운 군대 조직문화와 운영원리를 도입해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병사의 의견 수렴, 정신상담 청구권, 근무지 재배치 권리 등 병사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군인헌법의 제정,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강화도 검토해 볼 상항이다.

4. 법적 제제 측면

최근 군내 성관련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군이 군내 성범죄 처리문제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⁵⁾ 따라서 군내 성범죄에 대한 군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불관용 원칙'을 성범죄에 대한 군의 기본입장으로 천명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고 있다. 특히 군내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을 매개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주안점이므로 규정제정 시 어떠한 경우 누구든지 간에 성범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범죄행위의 정도에 따른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 성범죄행위란 가해자가 무의식적이거나 부주의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아주 경미한 것에서부터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병영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은폐되고 쉬쉬 넘어가기 쉬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상처와 군의 사기저하 및 전력손실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내성범죄와 관련된 군형법 조항을 보다 더 강화하고 피해신고도 강화하는 등

14)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의뢰로 현역사병 232명과 전역 1년 미만의 전국 11개 대학 재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03)한 결과 '복무 시 성적 접촉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9.1%(34명)이 '있 었 다'고 응답했다.

15)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579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기소 279명(47%), 집행유예 156명(27%), 벌금 38명(7%), 등이며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2명(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 왔음을 알 수 있다.(2006. 7.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료 참조).

상시적 예방체계구축도 필요하다.

5. 환경개선 측면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에 대한 남성 상관들의 성도덕 문란행위에 뜻지않게 고질적인 것이 바로 동성 간 성추행이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하루 24시간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는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년여의 밀폐된 공간생활이 자연히 동성 간 성 욕구분출이나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군대 내 성추행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만의 책임으로 돌려 처벌하는 식의 단선적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신세대 장병들의 성 심리와 병영 환경 등을 종합 검토 고려한 병영 내 환경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⁶⁾

V. 결론

군대내 성범죄는 군 당국의 조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선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실상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다.

이는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것도 있지만 엄격한 군 내부의 특성상 병영 내 성추행 등이 침묵 속에 묻히는 사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를 은폐하려는 군의 폐쇄성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자체징계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처벌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형량도 징역 1년 이하로 가벼워 군 형법상 사건예방 효과가 없다는 군 안팎의 지적도 있다. 아울러 동성애성향을 가진 군인을 사관학교나 산병교육대 시절부터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병영 내 내무생활 중 신참의 성 경험담 발표와 가벼운 성기접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하나의 '통과의례'쯤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역시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군이 군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 군의 5% 수준인 7,00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군내 비중이 커질 전망이며, 한국군의 경우 미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여군의 전투병과 배치를 우리군은 시행하고 있어 야전에서

16)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사회적 성 개방풍조에 편승한 일부장병들의 성 윤리부재와 30명 기준의 소대 급 내무반에 40여명이상이 '칼잠'을 자고 3명이 매트리스 2장을 깔고 자는 열악한 내무반 환경을 꼽았다. 따라서 넓은 병영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책정(1673 억 원) 현재 40명이 함께 자는 침상 형 내무반을 선진국처럼 한방에 2~9명씩 잠을 자는 분대단위 침대 형 내무반 환경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 여군에 대한 성범죄 위험은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가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군에서의 성 군기 위반사고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와 단결 및 군 기강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군의 전투능력을 뛰어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에서 보다 엄격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강화는 물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병사의견수렴, 정신상담청구권, 근무지 재배치권리 등 병사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열악한 환경 개선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 군인의 인권보호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군 조직의 생리와 논리가 절대우선시 될 수 없는 군 본연의 임무임이 자명하다. 또한 과거의 병영문화가 폐쇄 공간 이었다면 기존의 군대문화는 열린 공간으로 점차 변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부 및 지휘관들도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2001). 「성 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국방부 훈령 제 686호,
- 공군본부.(2009). 「공군범죄분석자료」, 공군본부 헌병 단.
- 김미린.(2004). 군내 성 군기위반사고에 관한 고찰, 「국방부 군사 법 논집」, 제9집 297-316.
- 김선희.(1999).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99제·개정법을 중심으로, 「신라대 여성연구논집」, 제 10집.
- 김예림.(1998).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름호.
- _____.(1999).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과 사용자 책임, 「노동법률」, 9월호.
- 김현정.(1997).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희기.(2000). 국내 저1호 성희롱 판결, 「시민과 변호사」, 4월호.
- 임동진.(200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주.(200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책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2000).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률」, 7월호.
- 이성은.(1995). 직장 내 성희롱에 준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2000). 성범죄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생 생활연구」, 제2권,
- 천대운.(1999). 「성희롱 정책 : 이론과 실제」, 선학사.
- 이재상.(2008). 「형법각론」, 박영 사.

- 이만종.(2007). *최신범죄학개론*, 학현사.
- 엄현택.(1999). 「직장 내 성희롱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
- 서경석.(1999). 「여성보호법」, 노문사.
- 문강분.(1999). 「성희롱 예방가이드」, 매경인력개발원.
- Karen E. Lindenberg and Laura A. Reese.(1996). "Sexual Harassment Policy : What Do Employees Want".
- Karen E. Lindenberg and Laura A. Reese.(1997). "Victimhood and the Implementation of Sexual Harassment Policy".
- Lynda Jones Hartel & Helena M. Von Villa(1995). "Sexual Harassment, A Selected Annotated Bibliography.